

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 사 경 과

1992. 11. 6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문교사회위원회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84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92. 11. 6)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 안 이 유

(제안설명자 의사국장 이 근 수)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1992.9.17, 대통령령 제 13727호)으로 지방  
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액이 평균 10%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 
교육위원의 여비를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○ 여비지급 기준액 인상

- 현지교통비 4,000원 ~ 5,000원 → 4,500원 ~ 5,000원

- 숙박비 13,500원 ~ 16,000원 → 15,000원 ~ 17,000원

- 식비 9,000원 ~ 10,500원 → 9,500원 ~ 11,000원

○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內에서의 출장시 현지 교통비외에 식비도  
지급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 전문위원 김 영 만 )

-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의 개정(대통령령 제13727호, 지방자치법시행령[별표 5])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
- 공무로 여행할 때 여행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현재 3개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2개 지역으로 조정하고,
- 위원회사무실 소재지 内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에 대해 현지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식비도 지급토록 하고 출장범위를 확실히 규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수 의견 요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개정 조례안

나. 신문 대비표. 끝.